

부 령

●외교부령제80호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7월 13일

외 교 부 장 관 인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재외동포영사대사”를 “재외동포영사실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7명”을 “10명”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에서의 우리 국민 보호 강화와 영사 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하여 재외동포영사국과 재외동포영사대사를 통합하여 제2차관 밑에 재외동포영사실을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외교문서공개심의회 위원 중 재외동포영사대사를 재외동포영사실장으로 변경하는 한편,

공개할 외교문서에 대한 업무 증가에 대비하고 외교문서 예비심사 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 최대 7명 이하인 예비심사위원 수를 10명 이하로 늘리려는 것임.

<외교부 제공>

고 시

●환경부고시제2020-155호

화학물질확인 제외기준 일부개정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화학물질확인 제외기준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13일

환경부 장관

화학물질확인 제외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에서 제외되는 화학물질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화학물질확인 제외 기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에서 제외되는 기준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함유되어 그 사용과정에서 함유된 화학물질이 유출되지 않는 경우
 2. 기계에 내장되어 수입되는 화학물질 및 시험운전용으로 기계 또는 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경우(단, 별도로 화학물질 그 자체로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그 화학공정에서 전량 사용되는 화학물질로서 제조되는 설비로부터 의도적으로 제거·분리되지 않는 경우
 4. 공기, 수분, 미생물 또는 햇빛과 같은 환경적 요인에 노출되어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화학반응으로부터 생성되는 경우
 5. 자연에 존재하는 물질 등 「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환경부고시)의 별표 1에서 정하는 물질인 경우(단, 별표 1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수화물 및 유해화학물질인 경우는 제외한다)
 6. 포도당, 녹말 등 「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환경부고시)의 별표 2에서 정하는 물질인 경우(단, 별표 2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수화물 및 활성탄 [Activated charcoal ; 64365-11-3, Activated carbon ; 7440-44-0]은 제외한다)
 7.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단, 유해화학물질인 경우는 제외한다)
-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5-162호, 2015. 9. 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00호, 2020. 0. 0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20-90호

「항만법」 제60조 규정에 의거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마리나 건립공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마리나 건립공사 실시계획 승인

1.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

- 1) 명 칭 :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마리나 건립공사
- 2) 목 적 : 북항 재개발지역의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마리나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해양·레저 체험형 마리나 항만시설 건립

2. 사업구역의 위치·면적

- 1) 위 치 : 1단계 재개발사업지내 마리나지구
- 2) 면 적 : 26,466.27㎡